

## 5. 청소년 공부방 운영

전국의 도시 영세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상대적 빈곤감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학습 복표를 포함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고민 또는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기존의 마을단위 공부방, 새마을문고 형태를 운영면이나 내용면에서 보다 확대 발전시킨 청소년 공부방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표 8-2-1〉 시·도별 청소년 공부방 설치 현황(2004년) (단위 : 개소)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수		427	88	34	24	14	16	2	13	27	24	26	26	15	19	28	47	24

자료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공부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견실한 단체 중에서 사회봉사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및 뜻있는 개인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할 시·도에서는 운영실태를 지도·확인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의 시설화보는 별도의 신규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내 공공시설, 청소년단체, 종교 및 공공사회의 복지시설 등의 기존시설을 사용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내의 기존 공부방 중 영세시설을 확대·

보강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보강·활용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1개 소당 사용면적은 25평 이상을 기본규모로 하고 있다.

운영요원은 대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종교인, 주부 등의 전임자원봉사자를 1개소당 최소한 1명을, 일일자원봉사자를 1~2명을 배치하여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식비 및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의 1개소당 연간예산은 시설운영,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홍보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00만원이며,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을 분담·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은 저소득층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의 건정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10년 이상 된 공부방에 대한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더욱 쾌적한 학습여건을 제공하고, 200석 이상 규모의 공부방중 이용율이 높고 기본기능(열람실)외에 최소한의 강의실, 급식시설이 가능한 대규모 청소년 공부방은 지역연계형『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6.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올바른 인격체로 육성하는 일은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19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우리 농어촌도 국제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어촌이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농어촌발전대책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기처 수립하게 되었다. 농어촌 지역사회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농어촌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대책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청소년 지원을 전담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농어촌 중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미래사회와 주역이 될 인재양성 및 농어민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4년 1월 24일 설립하여 농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장학사업, 해외 인수사업, 수련사업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기구는 이사회, 감사, 사무국이며, 이사회는 이사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기획팀과 사업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주요 사업 실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출신 국내 대학생 26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대학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는 박과축제 한마당을 실시하여 농촌전통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 7.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최근 어촌현실은 산업화·도시화의 영향 및 복지·문화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한 탑어촌 현상과 기존 어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가고 있다. 또한 수산업개방화의 가속화로 국제 경쟁력에 등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산업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에 성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

소년에게 어업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경영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통하여 어업인후계자를 육성해오고 있다.

이러한 어업인후계자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어업기반시설자금지원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경영교육 및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초기 어촌성적 유통을 위하여 1994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어업인후계자 세도를 도입,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여 34개월간 의무 종사할 경우 어업인후계자로서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

어업인후계자는 이러한 기반시설자금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전업 어가, 신도어업경영체로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되며 2004년 말 현재 3,607 역원을 지원하여 16,029명이 육성되었으며, 이들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맞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를 위하여 전국의 29개 수산관리과 및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전담 어촌지도사를 배치하여 어업별 기술지도와 영어지도는 물론 각종 수산관계 정보를 보급하는 등 인증 지원체계를 갖추어 지원하고 있다.

<표 8-2-2>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면, 백만원)

구분 계	합 계	'03년까지		'04년지원		
	16,029	360,700	15,552	346,350	477	14,350
일반후계자	13,811	243,663	13,432	234,213	379	9,450
전업어가	2,176	113,612	2,078	108,712	98	4,900
신도어업경영체	42	3,425	42	3,425	-	-

자료: 해양수산부

2005년도에는 일반후계자 315명, 전업어가 98명을 선정하여 각각 95억 원, 49억원 등 총 1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립기반안정을 위하여 1인당 최저 지원규모를 2004년 20백만원에서 40백만원으로 향상하여 지원한다.

## 제 3 장 청소년 상담활동

### 1. 청소년관련 상담기관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상담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행정기관지원상담실, 학교상담실, 민간사회단체 및 종교기관의 상담실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숫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우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되는 상담기관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기관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 12개 청소년상담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상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상담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교육종합상담실, 14개 독학정보 상담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는 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12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41개 청소년쉼터(민간쉼터 포함)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60개 아동상담소, 85개 여성복지상담소, 42개 간이상담소, 337개 (종합)사회복지관, 78개 장애인복지관, 46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노동부 산하에는 중앙고용 정보관리소 직업지도과, 122개 고용안정센터, 20개 인력은행, 24개 직업전문학교 생활지도과가 있으며, 법무부 산하에는 9개 소년분류심사원, 12개 소년원, 13개 한국갱생보호공단, 26개 보호관찰소가 있다.

또한 정부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상담기관으로는 사회단체 상담실, 종교단체 산하 상담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법인체의 형태를 취하

고 있으며, 상담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사회상담기관과 단체의 부분적인 활동으로 상담실을 두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53개 YMCA, 62개 YWCA, 30개 흥사단, 8개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 상담실, 44개 성폭력피해 상담소, 15개 생명의 전화, 19개 여성의 전화, 26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3개 대한가족협회청소년 상담실 등이 있다. 한편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의회 산하의 기독가족상담소, 천주교의 나눔의 전화, 불교의 자비의 전화 등이 대표적인데 기독교 상담실 22개, 카톨릭 상담실 25개, 불교계 상담실 81개, 원불교 상담실 2개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설 상담기관은 대상별, 연령별, 문제영역별 차별화된 전문상담능력으로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설상담기관으로 전문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파악되는 곳은 전국에 6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기관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상담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각급 청소년관련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부분적이며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부족, 상담시설의 미비, 정부의 지원미약, 상담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주변환경과 상호 역동적인 관계로 인해 생기는 복합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청소년상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또한 상담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앙차원에서 청소년 상담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교법으로 편찬·보급하며, 전문상담인력 양성과 청소년 상담요원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기능을 수행하고, 상담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센터로서의 역할과 각급 청소년관련 상담기관의 총괄, 자문, 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구가 필요하다.

## 2.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활동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기법 연구 및 자료제작 보급,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운영, 국내·외 상담기관간의 교류, 정보자료 수집 및 공급, 청소년 상담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지원,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등 전국 상담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및 청소년 품성계발사업을 통한 상담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8-3-1〉 상담 및 교육연수 사업실적(2004년)

(단위: 명)

구 분	계	상 담	또래상담자 양성	청소년 품성계발	부모교육	상담지도 및 세미나
참가자수	10,981,367	10,938,328	9,706	10,461	21,836	1,036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범상담 사업은 청소년의 고충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함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상담은 물론 청소년문제 예방 차원의 상담활동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표 8-3-2〉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2004년)

(단위 명)

구 分	내 방 상 담		전화상담	사 이 버 상 담			웹심리검사 및 전문가연계	심리검사	계
	개 인	집 단		자료조회	메일상담	채팅상담			
지 도 자	60	173	215				12	460	
학 부 모	1,675	168	3,165				142	5,150	
일 반 인	617	119	765				19	1,520	
청 소 년	2,429	425	2,441				580	5,875	
				12,300,313	10,978	1,680	13,006		12,325,977
계	4,781	885	6,586	12,300,313	10,978	1,680	13,006	753	12,338,982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표 8-3-3〉 문제유형별 상담실적(2004년)

(단위 명, %)

구분	가정	비행	학교 부적응	진로	성	대인 관계	성격	정신 건강	생활 습관 태도	기타 상담	단순 정보 제공	계
건수	2,520	1,046	1,401	449	1,838	1,436	585	663	295	1,134	0	11,367
비율	22.2	9.2	12.3	4.0	16.2	12.6	5.1	5.8	2.6	10.0	0	100

주 : 개인상담 및 전화상담의 숫자임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사이버상담은 1998년 5월 28일부터 국내최초로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youconet.or.kr)를 개통하여 온라인 상담, 이메일 상담, 문제해결백과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과 동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감각적 특

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영상, 음성, 만화 등을 활용한 종합 멀티미디어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의 이용건수는 2004년 한해동안 10,927,152건이고 이용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9월에는 국내외 청소년상담 관련자료를 총 망라하는 상담정보시스템이 완료됨으로써 이용자 대상을 청소년 중심에서 교사, 상담전문가, 학부모로 확대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상담전문가 연계시스템, 문제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상담 이용자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라 사이버상담 전문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이미 진행중인 사이버전문상담원 양성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존의 시범상담사업과 더불어 청소년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개발, 정책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청소년 상담요원 상담능력 제고 및 상담기법 보급 등의 교육·연수사업, 청소년 상담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사업,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 청소년품성계발(도덕성 증진) 사업, 청소년 또래 상담사업, 청소년상담지도자대회 등이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상담프로그램·상담기법개발사업에는 비행청소년상담개발연구, 청소년인터넷과다사용예방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진로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수월성촉진프로그램 개발연구, 통일대비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학업중단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청소년의 생활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및 상담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상담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시·도 청소년 상담활동

#### 가.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중앙 차원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연계하여 지방청소년상담,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상담을 처리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실은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 왔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청소년종합상담실로 명칭을 바꾸어 1991년도에 부산, 대전, 청주, 1992년도에 인천,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수표동), 1999년도에 울산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경남(창원), 충북(청주) 2개소이며, 그 외에는 청소년 유관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실은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국비 대비 지방비율이 50% 이상 지원되고 있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를 살펴보면,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 지역내 덕망있는 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발굴·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전문직 자원봉사체재구축, 사이버상담실 운영, 부모교육, 청소년또래상담, 청소년 품성개발프로그램 등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소년 상담실 연계망 「1588-0924」 상담전화를 개통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ONE 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나.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63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136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의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적으로 56% 수준으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확대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표 8-3-4〉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설치 현황(2005. 8. 현재)

(단위 : 개소, %)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립수	14 (25)	5 (16)	2 (10)	1 (8)	1 (5)	1 (5)	2 (5)	5 (18)	32 (32)	4 (12)	16 (16)	15 (14)	4 (22)	12 (23)	20 (20)	2 (4)
설치비율	56	30	20	13	20	20	40	28	100	33	100	107	18	52	100	50

주 : ( )는 기초자치단체 수

자료 : 청소년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은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상담실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136개소 중 55개소 (40.4%)가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81개(59.6%)는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은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지역사회내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통합적인,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6개소의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을 2008년까지 단계별로 234개 전국 시·군·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전문인력도 현재 1~2명에서 3~5명 수준으로 증원도록 할 계획이다.

#### 다. 2004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실적

2004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상담건수는 921,111건으로 청소년상담실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상담의 중추기관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 528,309건(57.4%), 남자 392,802건(42.6%)이며, 상담방법은 집단상담 630,771건(68.5%), 심리검사 139,052건(15.1%), 전화상담 61,598건(6.7%), 개인상담 64,177건(6.9%), 사이버상담 25,513건(2.8%)순이었다.

상담실 수혜대상자를 살펴보면 중학생 328,917명(35.71%), 고등학생 260,071명(28.23%), 학부모 91,351명(9.92%), 초등학생 113,492건(12.32%), 청소년지도자 44,591명(4.84%), 대학생 35,264명(3.83%), 일반인 32,172명(3.49%), 무직 10,574명(1.15%), 근로자 4,679명(0.51%)의 순으로 중·고생과 사춘기 연령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상담실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3-5〉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성별·대상별 상담실적(2004년)

(단위 건)

구분	성 별			대 상 별								성 인				
	남	여	소계	청 소 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소계		
				초	중	고	대	근로	무직	소계	학부모					
개인상담	26,599	37,57	64,17	12,01	14,83	12,24		2,534	647	2,528	44,804	14,26	1,382	3,732	19,37	
	8	7		1	7	7					9				3	
집단상담	266,790	363,9	630,7	84,16	245,1	181,5	22,01	1,964	4,808	539,66	44,49	33,76	12,85	91,10		
	81	71		2	21	98	0			3	4	4	0	0	8	
전화상담	25,289	36,30	61,59		823	4,920	8,404	3,096	1,098	2,115	20,456	24,54	7,078	9,516	41,14	
	9	8									8				2	
심리검사	64,795	74,25	139,0	14,75	51,56	50,68		6,523	756	644	124,92	7,315	1,877	4,938	14,13	
	7	52		8	0	1				2					0	
인터넷상담	8,589	14,83		23,42	1,607			11,55	6,548	886	205	409	21,207	671	475	1,074
	8	7		2											2,220	
채팅	740	1,346	2,086	131	927	593	215	9	70	1,945	64	15	62	141		
합 계	392,80	528,3	921,1	113,4	328,9	260,0	35,26		4,679	10,574	752,9	91,35	44,59	32,17	168,1	
	2	09	11	92	17	71	4			4	97	1	1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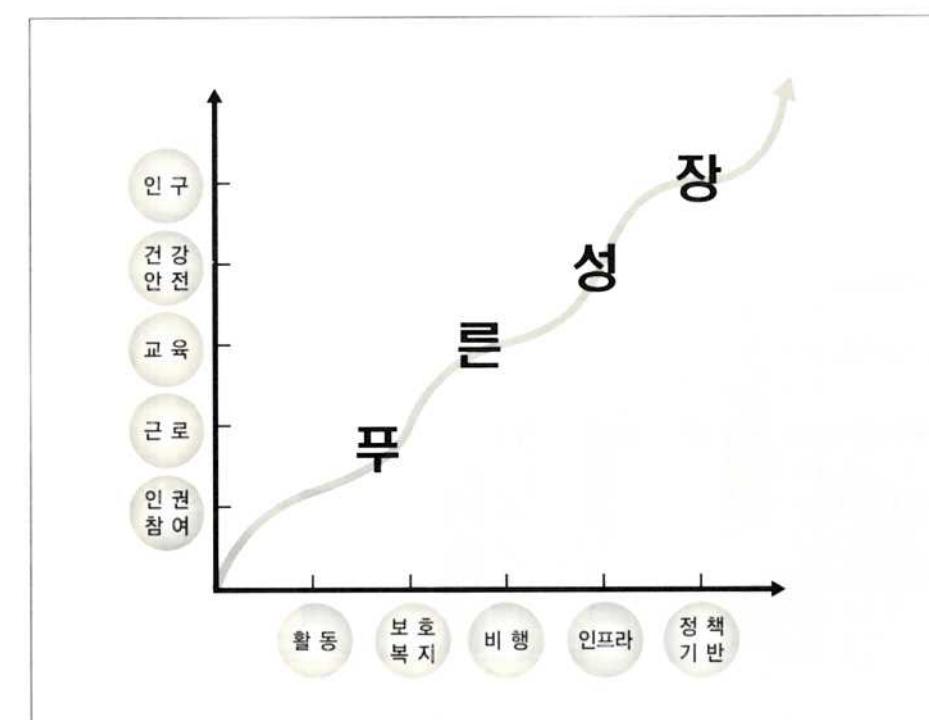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상담원 실적 포함)

#### 4. 청소년단체의 상담활동

청소년단체에서 수행하는 상담활동은 매우 미미한 실정인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 중 중앙단위의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한국청소년연맹, 서울YMCA, 흥사단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 청소년단체들도 지방지부의 독자적인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단체들이 각 단체별로 회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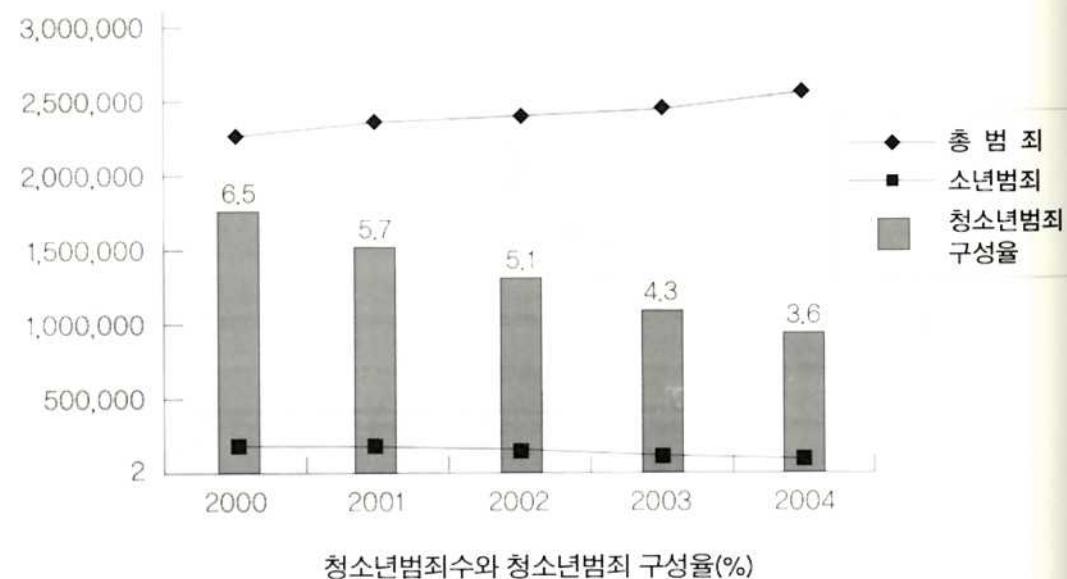
개발사업, 출판홍보사업, 문예활동사업, 국제교류사업 등 다양하고 특성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회원 또는 일반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고충해소나 지도측면에서의 청소년 상담활동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단체의 기능에 있어 청소년상담사업은 역할을 두고 확대 추진해야 할 분야이다.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들에 있어서도 상담인력은 대부분 2~3명 이내의 상담실 요원과 시간제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실적을 보면 대부분 전화상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는 전화상담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고민에 대한 단순지식이나 정보 등을 주로 상담처리함을 감안하면 전문종합상담활동을 수행하는데에는 다소 미흡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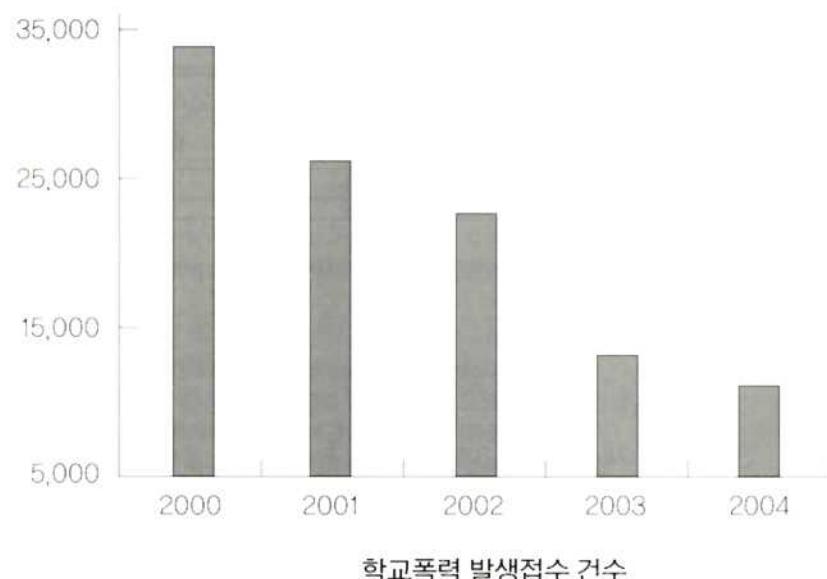




**자|**난 5년간 총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청소년범죄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총범죄 대비 청소년범죄의 구성율은 2000년에 6.5%였던 것이 2004년에는 3.6%에 그치고 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전개 등 학교폭력예방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 한편,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33,833명 접수되었으나, 2004년에는 10,548명으로 3분의 1이상 접수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 1 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지난 5년간 종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청소년 범죄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종범죄 대비 청소년범죄의 구성율은 2000년에 6.5%였던 것이 2004년에는 3.6%에 그치고 있다.

<표 9-1-1> 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구성 현황

구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범죄	2,329,134	2,426,050	2,416,711	2,441,267	2,606,718
청소년범죄	151,176	138,030	123,921	104,158	92,976
구성비율(%)	6.5	5.7	5.1	4.3	3.6

자료 대검찰청

2004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2.2%, 재산범이 34.9%, 교통사범이 24.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표 9-1-2>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구 분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51,176	138,030	123,921	104,158	92,976
소 계	4,421	3,479	2,699	2,868	2,877
강 살 인	45	49	60	19	25
력 강 도	2,691	1,885	1,375	1,550	1,218
범 강 간	1,515	1,371	1,122	1,192	1,501
방화·설화	170	174	142	107	133
폭 행·상해	56,711	51,095	39,911	31,532	29,940
기 타	56,125	50,598	39,465	31,199	29,561
공 갈	488	420	386	272	327
기 타	98	77	60	61	52
소 계	39,834	33,822	37,981	36,049	32,487
재 침 도	34,236	25,926	26,484	24,208	24,215
잔 훼 령·배 임	1,048	981	866	840	765
장 물	555	343	308	246	283
사 기	3,995	6,572	10,323	10,755	7,224
교 통 사 범	42,537	41,869	36,006	26,022	22,452
기 타	7,673	7,765	7,324	7,687	5,220

- 주 1) 강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포함  
 2) 강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사범 포함)  
 3) 폭행·상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범 포함  
 4) 공갈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포함  
 5) 폭력범 기타는 제보와감리(특기법 포함), 협박, 약취와유인(특기법 포함)  
 6) 침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침도) 포함  
 7) 훼령·배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훼령, 배임) 포함  
 8) 장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장물) 포함  
 9) 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포함  
 10) 교통사범은 교통망해악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기법(주차법)

자료 대검찰청

## 2. 청소년 마약류사범 동향

청소년마약류사범은 2000년에 비해 2002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표 9-1-3>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증감률)	전체 마약류사범	청소년 마약류사범				
		14~15세	16~17세	18~19세	소계	
2000	10,304 (-2.7)	0 (0)	2 (6.7)	28 (93.3)	30 (100)	
2001	10,102 (-2.0)	0 (0)	2 (8.3)	22 (91.7)	24 (100)	
2002	10,678 (5.7)	0 (0)	11 (13.9)	68 (86.1)	79 (100)	
2003	7,546 (-29.3)	3 (8.1)	6 (16.2)	28 (75.7)	37 (100)	
2004	7,747 (2.7)	0 (0)	0 (0)	18 (100)	18 (100)	

주 : ( )는 구성비

자료 : 대검찰청

한편 2004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685명으로 전년도 912명 대비 24.9% 감소하였다. 특히 19세 이하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단속현황을 보면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표 9-1-4> 연령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현황

(단위 명)

연령 연도	15세 미만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 29세	3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00	1 (0.1%)	118 (5.0%)	362 (15.5%)	333 (14.2%)	287 (12.3%)	179 (7.6%)	841 (35.9%)	185 (7.9%)	36 (1.5%)	2,342 (100%)
2001	3 (0.2%)	48 (3.0%)	182 (11.5%)	170 (10.7%)	158 (10.0%)	108 (6.8%)	689 (43.5%)	203 (12.8%)	23 (1.5%)	1,584 (100%)
2002	51 (4.4%)	28 (2.4%)	117 (10.0%)	73 (6.2%)	87 (7.4%)	62 (5.3%)	572 (48.8%)	173 (14.8%)	9 (0.8%)	1,172 (100%)
2003	18 (2.0%)	33 (3.6%)	37 (4.1%)	33 (3.6%)	40 (4.4%)	37 (4.1%)	503 (55.2%)	208 (22.8%)	3 (0.3%)	912 (100%)
2004	12 (1.8%)	17 (2.5%)	23 (3.4%)	16 (2.3%)	24 (3.5%)	29 (4.2%)	343 (50.1%)	216 (31.5%)	5 (0.7%)	685 (100%)

주 : (-)는 증감률

자료 : 대검찰청

## 3. 학생범죄의 동향

학생범죄는 소년범죄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소년범죄 대비 구성비는 2000년에 64.2%에서 2004년에 68.5%로 증가했다.

<표 9-1-5>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구 分	전체범죄(A)	소 년 범 죄		학 生 범 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2000	2,329,134	151,176	6.5	97,056	64.2
2001	2,426,050	138,030	5.7	85,040	61.6
2002	2,416,711	123,921	5.1	76,489	61.7
2003	2,441,267	104,158	4.3	68,549	65.8
2004	2,606,718	92,976	3.6	63,678	68.5

자료 : 대검찰청

## 제 2 장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리

### 1. 청소년 비행의 예방

#### 가. 경찰의 예방활동

##### (1) 청소년 성매매 근절

경찰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NGO·학교 등과 연계, 지속적인 예방·홍보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전년보다 18.1% 증가한 1,593명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712명을 구속하였다.

<표 9-2-1> 청소년 성매매사범 검거·조치 현황

(단위: 명)

연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01	1,255	2,034	803	1,231
2002	1,270	2,014	691	1,323
2003	1,349	2,099	579	1,520
2004	1,593	2,680	712	1,968

자료 : 경찰청

##### (2) 미아·가출청소년 선도

2004년에 발생한 미아는 전년에 비해 26.7% 증가한 4,064명으로 집계되었고, 가출인은 전년에 비해 4.1% 증가한 63,142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출인 중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26.3% 증가한 반면 20세 이상은 2.1%가 감소하였다. 일반미아의 경우 2004년도에는 미발견이 1명뿐이나 장애미아의 경우 미발견이 85명이나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2> 미아·가출인 발생현황

(단위: 명)

연도	미아					가출청소년		
	일반미아(8세 이하)		장애인미아			총발생 건수	보호자 통보	미귀가
	발생 건수	발견현황	발생 건수	발견현황	보호자 인계			
2002	2,871	2,862	9					
2003	3,206	3,201	5	1,809 (6.23 이후)	1,793	16	13,374	12,547
2004	4,064	4,063	1	5,196	5,111	85	16,894	14,948

주 : 1) 2003. 6. 23부터 장애미아(정신지체 장애인 등)를 미아로 간주하여 별도 관리

2) 2004년 미발견 미아 1명(우정선, 9.19 경기 광주)은 악취유인 혐의로 수사 중

자료 : 경찰청

##### (3) 청소년 약물남용 단속

청소년 약물남용은 전년에 비해 유해화학물질사범 36.7%, 마약류 60.9% 감소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사범 중 청소년 비율은 13.8%로 나타났다.

〈표 9-2-3〉 청소년 약물남용 단속실적(유해화학물질)

(단위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약물남용	1,238	664	334	119	100

자료 경찰청

#### 나. 검찰의 예방활동

#####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까지 161,088명을 선도유예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였다.

〈표 9-2-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명)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소년범죄	151,176	138,030	123,921	104,158	92,976
선도유예	7,045	6,397	6,479	6,122	4,977

자료 대검찰청

2001년도까지는 선도유예소년의 재범율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2003년도에는 재범소년이 624명으로 재범율이 10.2%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2.0% 증가하였다.

〈표 9-2-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재범 현황

(단위 명, %)

연도	선도유예 인원	죄 명 별 재 범 자 수					
		계	재범율	절 도	폭력범	강 도	강 간
2000	7,045	883	12.5%	370(41.9)	296(33.5)	23(2.6)	7(0.8)
2001	6,397	852	13.3%	295(34.6)	326(38.3)	18(2.1)	5(0.6)
2002	6,479	684	10.6%	297(43.4)	223(32.6)	8(1.2)	2(0.3)
2003	6,122	624	10.2%	290(46.5)	176(28.2)	13(2.1)	2(0.3)
2004	4,977	608	12.2%	294(48.4)	176(28.9)	3(0.5)	3(0.5)

수 ( )인은 접유율임

자료 대검찰청

##### (2)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1997년 10월 대검찰청에 자원봉사위원 전국 연합회를 두고, 전국 53개 검찰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역 자원봉사위원 협의회를 발족 시켰으며, 지역 협의회 산하에 봉사위원회를 각 시·군·구 등 행정단위별로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등의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 한편,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2000년에 33,833명 접수되었으나 2004년에는 10,548명으로 3분의 1이상 접수건수가 감소하였다.

〈표 9-2-6〉 학교폭력 연도별 발생 접수현황

(단위 명)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발생인원	33,833	27,446	23,921	12,559	10,548

자료 대검찰청

다. 청소년위원회의 예방활동

#### (1)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로써 ‘청소년쉼터’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문화관광부(당시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으로 1992년에 서울YMCA 청소년쉼터를 개소한 것이 시작이다. 2004년 현재 전국에 40개 청소년쉼터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이 중 청소년위원회(국비)의 지원

만 받고 있는 곳이 1개소(서울YMCA쉼터)이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함께 받고 있는 곳이 22개소, 지방비만 지원받고 있는 곳이 7개소, 자부담 또는 예산구조가 파악되지 않은 곳이 10개소이다. 이중에서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쉼터는 총 18개소인데, 이 경우는 특별히 행정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설치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분포는 <표 9-2-7>과 같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 동안 전국 30개 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의 인원수는 총 3,905명이고, 연간 이용인원의 총수는 99,187명이다. 이것은 한 쉼터가 평균적으로 실인원 130여명과 연인원 3,306여명을 보호했고, 1일 평균 9명 정도의 가출청소년이 보호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9-2-7> 청소년쉼터 지역분포와 보호성별 (2004년)

(단위 : 개소)

소재지역	시설수	보호성별		
		남성	여성	혼성
전국	40	10	19	11
서울	7	3	4	-
부산	1	-	1	-
대구	2	1	-	1
인천	4	2	2	-
대전	2	1	1	-
광주	1	-	1	-
울산	1	1	-	-
경기	11	-	6	5
강원	-	-	-	-
충북	2	-	-	2
충남	2	-	1	1
경북	1	-	1	-
경남	2	2	-	-
전북	2	-	1	1
전남	1	-	-	1
제주	1	-	1	-

자료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표 9-2-8>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인원수 (2003. 10~2004. 9)

(단위 : 명, %)

성별	연령	실인원	평균	연인원	평균
남	9-12세	105(9.0)	3.5	3,443(9.9)	114.8
	13-15세	388(33.1)	12.9	11,680(33.7)	389.3
	16-18세	575(49.0)	19.2	16,496(47.6)	549.9
	19세이상	104(8.9)	3.5	3,021(8.5)	100.7
	소계	1,172(100.0)		34,640(100.0)	
여	9-12세	135(4.9)	4.6	4,216(6.5)	140.5
	13-15세	1,186(43.3)	39.6	22,538(34.9)	751.3
	16-18세	1,207(44.2)	40.3	25,913(40.2)	863.8
	19세이상	205(7.5)	6.9	11,880(18.4)	396.0
	소계	2,733(100.0)		64,547(100.0)	
총계		3,905		99,187	

자료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2) 드롭인센터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간접보호시설인 '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했는데, 앞으로 모든 광역시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을 신설한 이유는 진찰역 부근에 잠깐 들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출청소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2. 비행청소년의 사법 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軽微하여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처분에서 교육적인 치우를 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 가. 경찰

12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1986년 7월부터 경찰은 소년수사진단반을 구성, 소년범죄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2003년 10월부터 2개 경찰서(서울송파, 수원남부)에서 소년범 조사사범죄심리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년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표 9-2-9> 소년범죄 처리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부 송 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소유예	기소중지	기 타	
2000	153,085 (100)	45,922 (30.0)	13,312 (8.7)	32,610 (21.3)	81,625 (53.3)	3,850 (2.5)	63,122 (41.2)	3,786 (2.5)	10,867 (7.1)	25,538 (16.7)
2001	138,166 (100)	44,578 (32.3)	10,364 (7.5)	34,214 (24.8)	71,611 (51.8)	4,178 (3.0)	54,384 (39.4)	3,934 (2.8)	9,115 (6.6)	21,977 (15.9)
2002	124,076 (100)	37,192 (30.0)	8,450 (6.8)	28,742 (23.2)	67,110 (54.1)	4,421 (3.6)	48,155 (38.8)	4,649 (3.7)	9,885 (8.0)	19,774 (15.9)
2003	104,325 (100)	25,428 (24.4)	6,500 (6.2)	18,928 (18.2)	59,414 (57.0)	3,898 (3.7)	43,207 (41.4)	5,325 (5.1)	6,984 (6.8)	19,483 (18.6)
2004	93,060 (100)	21,125 (22.7)	5,473 (5.9)	15,652 (16.8)	55,775 (59.9)	3,503 (3.8)	41,619 (44.7)	3,199 (3.4)	7,454 (8.0)	16,160 (17.4)

주 : ①( )은 절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 나. 검찰

2004년 소년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차리한 내역을 보면 소년범죄자 93,060명 중 구공판 5.9%, 구약식 16.8% 기소유예 44.7%, 소년부송치 17.4% 등인 바, 이를 전체범죄의 기소유예율 11.2%와 비교하면 소년범죄의 기소유예율이 33.5%나 높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의 처리내역을 보면 구공판 2.7%, 구약식 21.8%, 기소유예 48.5%, 소년부송치 13.5% 등이다. 이를 전체 소년범죄의 처리내역과 비교할 때 구공판은 3.2%가 낮은 반면 기소유예는 3.8%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일시적인 잘못으로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별보다는 부모나 학교 당국이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관용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표 9-2-10〉 학생범죄 처리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부 송 치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무혐의	기소유예	
2000		98,124	23,587	3,973	19,614	60,281	2,675	48,147 9,459 14,256
	(100)	(100)	(24.1)	(4.1)	(20.0)	(61.4)	(2.7)	(49.1) (9.6) (14.5)
2001		85,037	22,894	2,813	20,081	50,174	2,807	39,605 7,762 11,969
	(100)	(100)	(26.9)	(3.3)	(23.6)	(59.0)	(3.3)	(46.6) (9.1) (14.1)
2002		76,617	20,665	2,409	18,256	45,313	2,760	34,925 7,628 10,639
	(100)	(100)	(26.9)	(3.1)	(23.8)	(59.2)	(3.6)	(45.6) (10.0) (13.9)
2003		68,711	17,417	2,052	15,365	40,998	2,489	32,299 6,210 10,296
	(100)	(100)	(25.4)	(3.0)	(22.4)	(59.6)	(3.6)	(47.0) (9.0) (15.0)
2004		63,689	15,550	1,688	13,862	39,518	2,540	30,916 6,062 8,621
	(100)	(100)	(24.4)	(2.7)	(21.8)	(62.0)	(4.0)	(48.5) (9.5) (13.5)

주 : (-)안은 접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 다. 소년분류심사원

##### (1) 위탁소년의 수용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0년 신수용인원은 10,160명이었으나 해마다 감소하여 2004년에는 5,925명으로 줄었고, 일일평균수용인원도 699명에서 367명으로 줄었다.

〈표 9-2-1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단위 명, %)

구분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수용인원	8,177	7,659	6,334	5,925
일일평균수용인원		699	552	486	433	367

자료 : 법무부

##### (2) 분류심사

2004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5,109명이었는데, 이 중 일반분류심사는 3,678명이 받았고, 특수분류심사는 1,431명이 받았다.

〈표 9-2-12〉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단위 명, %)

구 분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8,668	6,738	6,509	5,954
수용분류심사	일반분류심사	6,916	4,994	4,331	3,987	3,678
	특수분류심사	1,752	1,744	2,178	1,967	1,431

자료 : 법무부

#### 라. 소년법원

소년법원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대전·춘천·청주·진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

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표 9-2-13〉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법관송치	검사송치	지방경찰 청장또는 서장송치	타소년부 에서이송	소년법제4 조제3항에 의한통고
2000	36,520 (100)	6,190 (17.0)	24,449 (66.9)	5,863 (16.1)	18 (0.0)	( - )
2001	30,706 (100)	3,923 (12.8)	22,013 (71.7)	4,741 (15.4)	28 (0.1)	(0.0)
2002	26,811 (100)	2,881 (10.7)	19,402 (72.4)	4,512 (16.8)	15 (0.1)	( 0.0)
2003	24,222 (100)	2,045 (8.4)	17,667 (72.9)	4,474 (18.5)	14 (0.1)	22 (0.1)
2004	22,810 (100)	1,730 (7.6)	16,138 (70.7)	4,881 (21.4)	43 (0.2)	18 (0.1)

자료 법무부

소년법원의 판사는 감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현황은 〈표 9-2-14〉와 같다.

〈표 9-2-14〉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 불개시	검찰청 송치	기타
		소계	1호 처분	2호 처분	3호 처분	4호 처분	5호 처분	6호 처분				
2000	35,342 (100)	32,270 (91.3)	28,572 (80.8)	[10,783][10,404]	896 (2.5)	10 (0.0)	1,502 (4.2)	1,290 (3.7)	1,322 (3.7)	1,512 (4.3)	93 (0.3)	145 (0.4)
2001	30,496 (100)	27,314 (89.6)	23,848 (78.2)	[8,818][8,981]	717 (2.4)	7 (0.0)	1,420 (4.7)	1,314 (4.3)	1,255 (4.1)	1,798 (5.9)	97 (0.3)	32 (0.1)
2002	26,677 (100)	24,048 (90.1)	20,681 (86.0)	[7,869][8,325]	879 (3.3)	5 (0.0)	1,322 (5.0)	1,148 (4.3)	1,268 (4.8)	1,120 (4.2)	202 (0.8)	39 (0.1)
2003	26,484 (100)	22,569 (85.2)	19,846 (74.9)	[7,383][7,646]	534 (2.0)	- (4.2)	1,107 (4.1)	1,082 (4.6)	1,224 (9.2)	2,448 (0.8)	208 (0.1)	35
2004	22,678 (100)	19,958 (88.0)	3,353 (14.8)	[6,642][7,329]	547 (2.4)	- (4.5)	1,027 (4.7)	1,060 (4.9)	1,106 (6.3)	1,431 (0.5)	115 (0.3)	68

주 : 2호 및 3호 처분 [ ]내는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자료 : 법무부

###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 가. 소년원

##### (1)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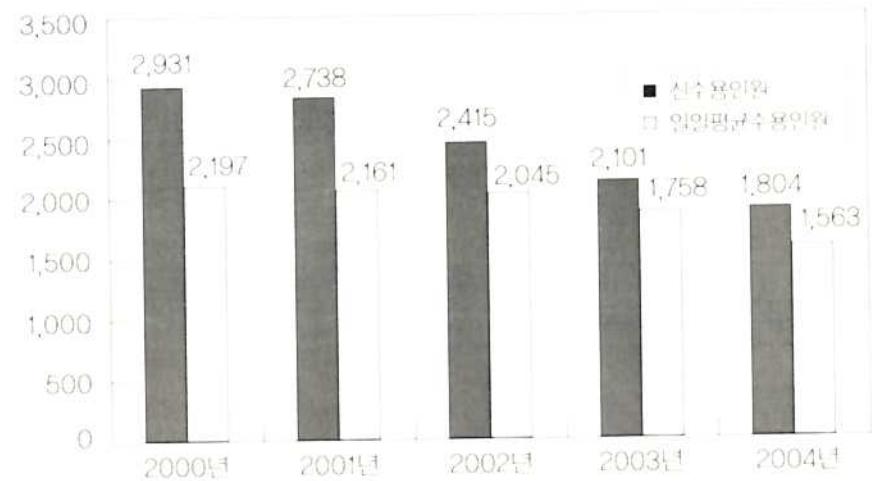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청주·대덕·안양·춘천·충주·제주·안산·장원·대진의료 등 전국에 15개가 설치되어 있다. 2004년 12월말 현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전체 직원은 1,106명으로 교육과 감호를 담당하는 소년보호직 공무원이 786명(교사자격증 소지자 297명), 별정직공무원인 직업훈련교사 38명,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간호

사 50명, 기타 기능적 공무원 229명, 건축직 1명, 진산직 2명이다.

<표 9-2-15> 소년원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 (2) 보호소년의 수용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2000년에는 신수용인원이 2,931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1,804명에 그쳤다.



자료 범부

<그림 9-2-1> 보호소년 수용현황

### (3) 소년원 교육

소년원학교는 전국에 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의 명칭 및 교육과정은 <표 9-2-15>과 같다.

구 분	기 관 (학교명)	처우 과정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정보통신중·고교)	일반	영어·중국어회화, 컴퓨터애니메이션, 경영정보, 멀티미디어정보통신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서울소년창업보육원
정보통신 학교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중·고교)	단기	영어·일본어회화,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전주소년원 (송진정보통신학교)	일반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단기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충주소년원 (계명정보통신학교)	교육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부산소년원 (오류정보산업학교)	일반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전산응용간축제도,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선반·금형
정보 산업 학교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일반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PC수리, 건축배관,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대전소년원 (원주정보산업학교)	일반	실용영어·중국어, 컴퓨터교육 컴퓨터산업디자인, 전산응용간축제도,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전기공사
직업 능력 개발 학원	안양소년원 (정십여자정보산업학교)	일반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미용, 미부미용, 컴퓨터산업디자인 중학교 교과교육
	제주소년원 (한길정보산업학교)	단기	실용영어·일본어, 컴퓨터교육 공사기문설, 지게차운전 중학교 교과교육

체능 교육	대덕소년원 (대산체육중·고등학교)	일반 단기	· 유도, 태권도, 복싱, 볼링, 씨름, 역도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예능 교육	안산소년원 (안산예술종합학교)	일반 단기	· 연극영화, 실용음악, 창작미술, 영상사진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실업 교육	창원소년원 (용덕중·관광정보고등학교)	일반	· 관광정보·제과제빵·헤어디자인·영어회화 · 중·고등학교
인문계학교	청주소년원 (미평중·고등학교)	일반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실용영어·컴퓨터교육
의료소년원	의료소년원 (대전소년분류심사원)	일반 단기	· 약물중독·정신 및 발달장애·신체질환 보호 · 소년의 전문적 치료 및 특수교육

자료 법무부

#### 나. 소년교도소

##### (1) 수용현황

현재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중인 소년수용자의 수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2-16〉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명)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수용인원	1,701	1,694	1,505	1,079	903

자료 법무부

##### (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수용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9-2-17〉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명)

구 분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육인원(계)	410	410	410	410	360	
일반학과교육	125	125	125	125	105	
방송통신고	285	285	285	285	255	
(졸업인원)	(43)	(50)	(46)	(37)	(37)	

자료 법무부

〈표 9-2-18〉 소년교도소 직업훈련 현황

(단위 명)

구 분	직종수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14	515	470	390	350	235
공공훈련	13	515	470	350	300	220
일반훈련	1	-	-	40	50	15

자료 법무부

#### 다. 보호관찰

##### (1) 조직

보호관찰행정 조직은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가 있고,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12개 보호관찰소와 23개 보호관찰지소가 설치되어 있다. 2004년 기준 보호관찰소 정원은 보호관찰관 131명을 포함하여 총 577명이다.

## (2) 보호관찰업무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시행 이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총 495,975명의 소년법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하였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추이는 2000년 43,594명, 2001년 35,241명, 2002년 30,544명, 2003년도 29,015명, 2004년도 26,531명이 접수되었고,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에 따라 <표9-2-19>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표 9-2-19> 연도별 보호관찰대상자 추이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선고 유예	집행 유예	소년 보호	가석방	가퇴원	가정 폭력	선도
2000	43,594	0	4,525	33,289	461	2,749	4	2,556
2001	35,241	0	3,133	26,813	212	3,103	5	1,975
2002	30,544	0	2,229	24,069	112	2,295	2	1,837
2003	29,015	1	1,653	23,729	59	1,567	2	2,004
2004	26,531	1	2,456	21,626	99	728	1	1,620

자료 : 법무부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양호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 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가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표 9-2-20>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성적별	2000	2001	2002	2003	2004
성적 양호자	계	1,872	1,538	1,036	844	562
	가해제	1,872	1,538	1,036	844	562
	부정기형 종료	-	-	-	-	-
성적 불량자	계	10,333	11,140	11,324	9,512	8,591
	경 고	7,642	8,069	8,306	6,643	6,482
	구 인	1,001	1,053	1,021	963	726
	유 치	980	1,006	993	926	672
	취소 · 변경 등	585	602	715	776	554
	기 타	125	49	289	204	157

주 : 1) 취소·변경은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석방·가퇴원취소, 가정보호취소

2) 기타는 기간연장, 보호관찰 정지

자료 : 법무부

##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2004년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인원은 2003년도에서 이월되어 계속 실시중인 1,539명과 2004년도에 새로이 접수된 7,557명으로 그중 6,942명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449명은 처분변경, 사망·이송 등으로 종료되었으며, 나머지 1,705명은 2005년으로 이월되었다. 보호관찰기간 중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율은 4.4%와 2.9%(2004년 재범률)로서 비행

청소년 친도 및 심성순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9-2-21〉 사회봉사·수강명령 실시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봉사	접수	10,606	8,031	7,584	7,041	5,683
	종료	10,783	8,526	7,623	7,375	5,741
	이월	2,090	1,595	1,556	1,222	1,164
수강 명령	접수	1,921	1,250	1,206	1,544	1,874
	종료	1,572	1,585	1,272	1,514	1,650
	이월	689	354	288	317	541

자료 : 법무부

#### (4)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

판결전조사는 2000년 3,647건에서 점점 증가하여 2004년에는 4,660건이 이루어졌으나, 환경조사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표 9-2-22〉 연도별 판결전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실적

(단위 건)

연도	환경조사 및 개선			판결전조사
	소 계	환경조사	환경개선	
2000	5,264	5,255	9	3,647
2001	5,221	5,221	0	3,901
2002	4,829	4,828	1	3,667
2003	4,610	4,610	0	4,040
2004	3,201	3,201	0	4,660

자료 : 법무부

#### 5) 간생보호활동

비행청소년에 대한 간생보호는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부 보호국 산하의 한국간생보호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간생보호공단은 중앙에 본부가 있고, 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에 13개 지부 및 8개 출장소, 6개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147명의 직원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이에 부수하는 사후관리, 재사회화 교육 등의 각종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9-2-23〉 한국간생보호공단 비행청소년 보호실적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사후 지도	원호지원 (생업조성금)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사회성 향상교육
2000		951	137	219	243	70	156	126	-
2001		1,509	158	-	624	-	506	187	34
2002		1,360	197	-	386	-	474	223	80
2003		1,013	101	-	296	-	341	214	61
2004		1,239	104	90	579	35	112	197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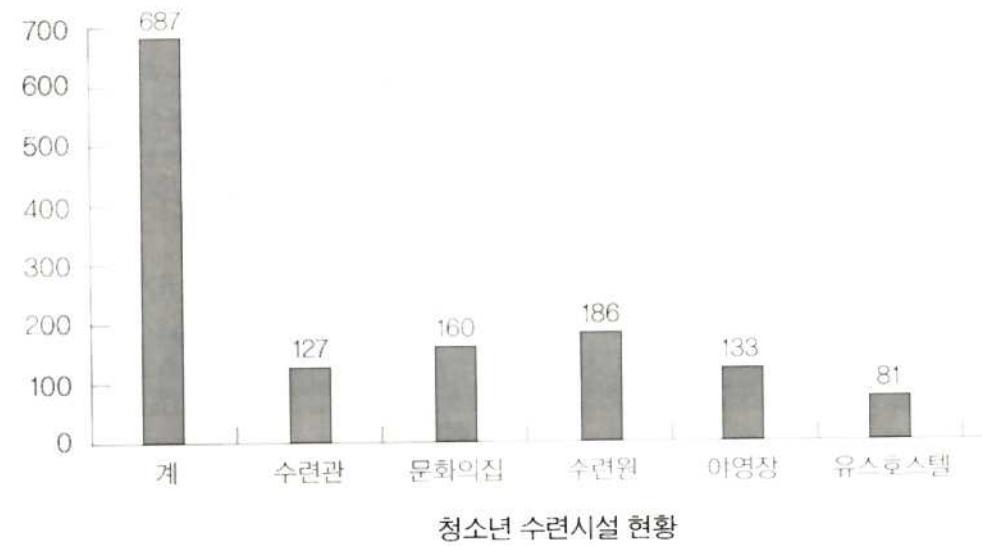
주 : 여비지급 및 생업조성금 지원은 2001년에 폐지(2004년 비지급, 원호지원은 민간독자로부터 협조받아 지원)되었고, 사회성 향상교육은 2001년부터 실시

자료 :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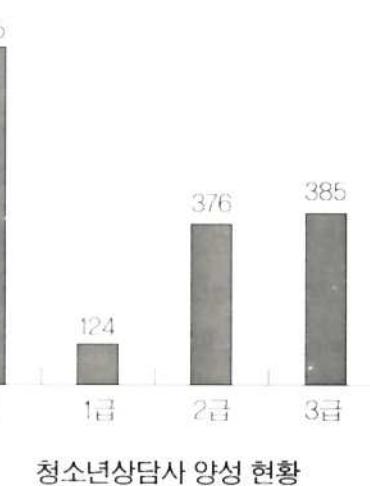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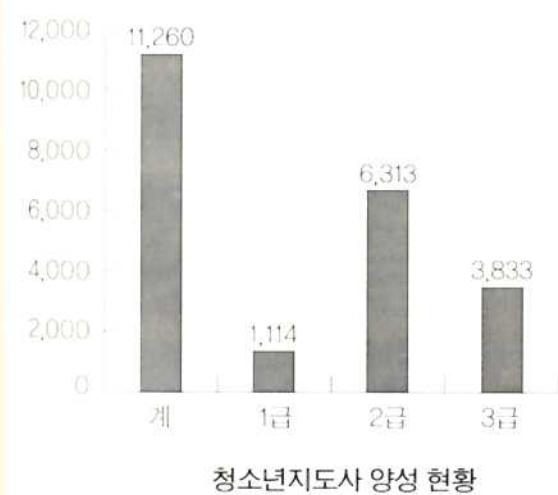
##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공** 공시설과 민간시설을 합하여 전국적으로 680여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이용시설이 있다.



**국** 가공인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1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8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 제 1 장 청소년시설

### 1.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民間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民間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1.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청소년이용시설

#### 2. 청소년이용시설

<그림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형 유형으로 구분된다. 2005년 이전까지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새롭게 세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된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재에 적합한 시설·서비스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 개에 불과하였지만,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이를 보완하여 수립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의 시행과 더불어 매년 시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3월 현재 68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10-1-1〉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005. 3 현재)

구 분	계	생 활 권			자 연 권			유스 호스텔
		계	수련관	문화의집	계	수련원	야영장	
합 계	687	287	127	160	319	186	133	81
공 공	470	272	122	150	188	79	109	10
민 간	217	15	5	10	131	107	24	71

자료 청소년위원회

### (1) 수련시설 설치

#### ①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998년 11월 개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1년 8월 개원)」을 개원·운영 중이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 청소년교류 협력사업 및 청소년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제청소년센터」를 2000년 7월 개관·운영 중에 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간의 네트워크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복천면 독립기념관 부지내(동곡)에 부지 24만 4천평, 연간평 1만여평 내외 규모로 약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하였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인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종관·지원을 위한 자인권수련시설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기

리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매태포리에 14만여평, 연간평 5천여평 내외 규모에 약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하였다.

국제청소년센터는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한국문화자료 소개, 유스호스텔 기능과 청소년단체를 위한 공간 확보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부지 1.508평, 연간평 3,658여평 규모의 숙박시설, 국제세미나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단체사무실 등을 약 157억원의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개원하였으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생활권수련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운영이 요구된다. 수련시설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1992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 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5년 3월 현재 687개의 수련시설 중 464개 소가 공공수련시설이며, 이중 323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③ 민간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더불어 민간법인,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금융, 세제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련시설 설치시 청소년육성기금을 장기 자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수련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각종 세제상 혜택 등을 제공한다. 특히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의 경우 민간의 참여가 용이하여 그 참여가 활발한 편이다.

### ④ 수련시설 설립 사진김토와 주택건설시 수련시설 설치계획 수립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설립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해당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심의과정에는 청소년관련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에서 손쉽게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2) 수련시설 운영 지원

####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지역사회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및 평가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별로 10~20명 내외의 지역사회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기구이다. 2004년에는 104개 기관을 선별하여 지원·평가하였으며, 해마다 2개 기관씩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표10-1-2>와 같다.

<표10-1-2>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정 시설

구 분	지원·평가시설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2003년	85개소	-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 울산남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2004년	104개소	- 매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 영통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자료: 청소년위원회

#### ②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범청소년수련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업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해의 사업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며, 지정된 시범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장비와 해외시설견학 지원과 같은 인센

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③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수련시설의 증가추세와 함께 각종 안전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관련기관과 협동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주요 구조부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수련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④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수련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설 간 정보교류, 시설간 권익과 교류사업 증진을 위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수련시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도 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상시적인 청소년활동정보 제공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사업, 안전관리지원사업, 시설안전공제회 기반조성사업, 법정 법인 설립 및 조직체계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도 가능하다.

### 나.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과학관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평생교육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⑤「산림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년이용관장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예술시설과 과학관, 체육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지방문화원, 영화진흥공사 등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

##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 가. 청소년보호시설

#### (1)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아동과 여성의 상업적 성착취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개설하였다.

#### (2) 청소년재활센터 및 기타시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청소년재활센터의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소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데, 이 경우, 보호시설로는 동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보호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선도보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지원시설로는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상담시설로는 여성복지상담소와 모·부자복지법에 규정된 모·부자복지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있다.

## 나. 청소년복지시설

### (1)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가족간의 갈등, 이혼, 학대 등의 가족해체 현상과 더불어 가출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이들이 견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로서 가출청소년 쉼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서울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05년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쉼터와 순수 민간쉼터 등 총 45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9세~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6개월 이하의 일시보호를 원칙으로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지역별로 경·경, 관공서, 학교, 가정, 상담실, 지역사회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각종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쉼터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출청소년 문제와 쉼터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쉼터의 제도적 근거 강화해야 하며, 둘째,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셋째, 청소년쉼터의 특성화·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청소년 쉼터 관련 통계는 제9부 제2장 참조).

### (2) 청소년 공부방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생활고충 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견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공부방은 종래에 단순한 학습공간만 제공해 주는 역할에 불과했던 기존의 마을단위 공부방, 새마을문고 형태를 운영면이나 내용면에서 보다 확대 발전시킨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제9부 제2장 참조).

### (3) 청소년선도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가정적·사회적으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실시토록 함과 아울러, 청소년의 효율적인 선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지도위원을 선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선도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13개소의 청소년의 선도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4)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복지 지원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아동양육시설 등 수용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와 같은 이용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수련장, 과학관 등 전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3년 12월 말 현재 수용보호시설은 279개소(이용시설 포함)에 18,818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용시설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운영비 지원방식을 개선, 시설당 총액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보호아동 규모 등의 비표준화로 실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2개 항으로 구분하여 집행이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아동시설의 보호방법도 점차 전환하여 종래의 대규모 수용보호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시에는 시설을 소규모로 현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제 2 장 청소년지도자

###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사자격증 소지자는 8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유형별 분류는 일반적으로 지도성격별로 청소년 전문지도자, 청소년일반지도자, 청소년자원지도자, 청소년상담지도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 2. 청소년지도사 현황

### 가. 청소년지도사의 정의 및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학생, 균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합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표10-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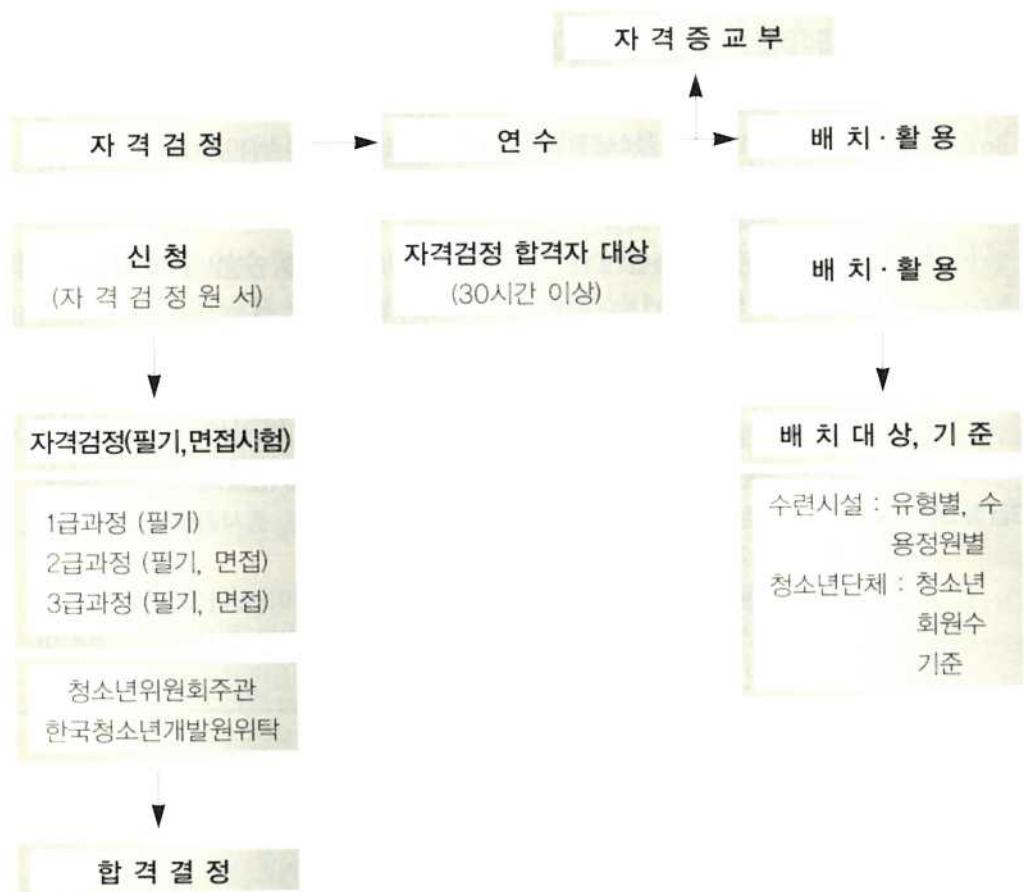
〈표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청소년지도사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급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급청소년지도사	

자료 : 청소년기본법

##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청소년위원회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위탁한 자격검정 실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소정의 의무 인수실시, 이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르면, 2급 자격기준 중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2008년 1월부터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

구 分	검 정 과 목	검 정 방 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 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 시험 면접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 시험 면접

자료: 청소년기본법

##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양성 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114명, 2급 청소년지도사 6,313명, 3급 청소년지도사 3,833명 등 총 11,260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으며 연도별 지도사 양성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2004. 12 현재)

연도	급수	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11,260	713	708	715	341	635	593	868	988	1,583	1,429	1,370	1,317
1급		1,114		96	101	47	131	120	128	113	97	117	90	74
2급		6,313	485	375	361	193	314	280	530	585	990	837	700	663
3급		3,833	228	237	253	101	190	193	210	290	496	475	580	580

자료: 청소년위원회

2005년도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2005년 10월 30일 실시하고, 자격검정(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12월 중에 자격인수를 실시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만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의 〈표10-2-4〉와 같다.

〈표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 치 기 준
청소년 수련관	1급청소년지도사 1인, 2급청소년지도사 1인, 3급청소년지도사 2인 이상,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 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 수련원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수용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과 500인을 초과하는 250인마다 1급, 2급 또는 제3급 청소년지도사 중 1인 이상을 추가로 둔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
청소년 아영장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다른 시설의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청소년 특화시설	2급청소년지도사 및 3급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인 이상 둔다.

자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단체의 경우,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0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1/2 초과하는 2,000인마다 1급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회원 수가 10,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수의 5분의 1 이상을 1급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3. 청소년상담사 현황

#### 가. 청소년상담사의 정의 및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청소년상담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와 교육차원의 공공기관인 초·중·고 일선학교 및 대학의 상담실, 사회차원의 각종 청소년관련시설 및 청소년업무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표10-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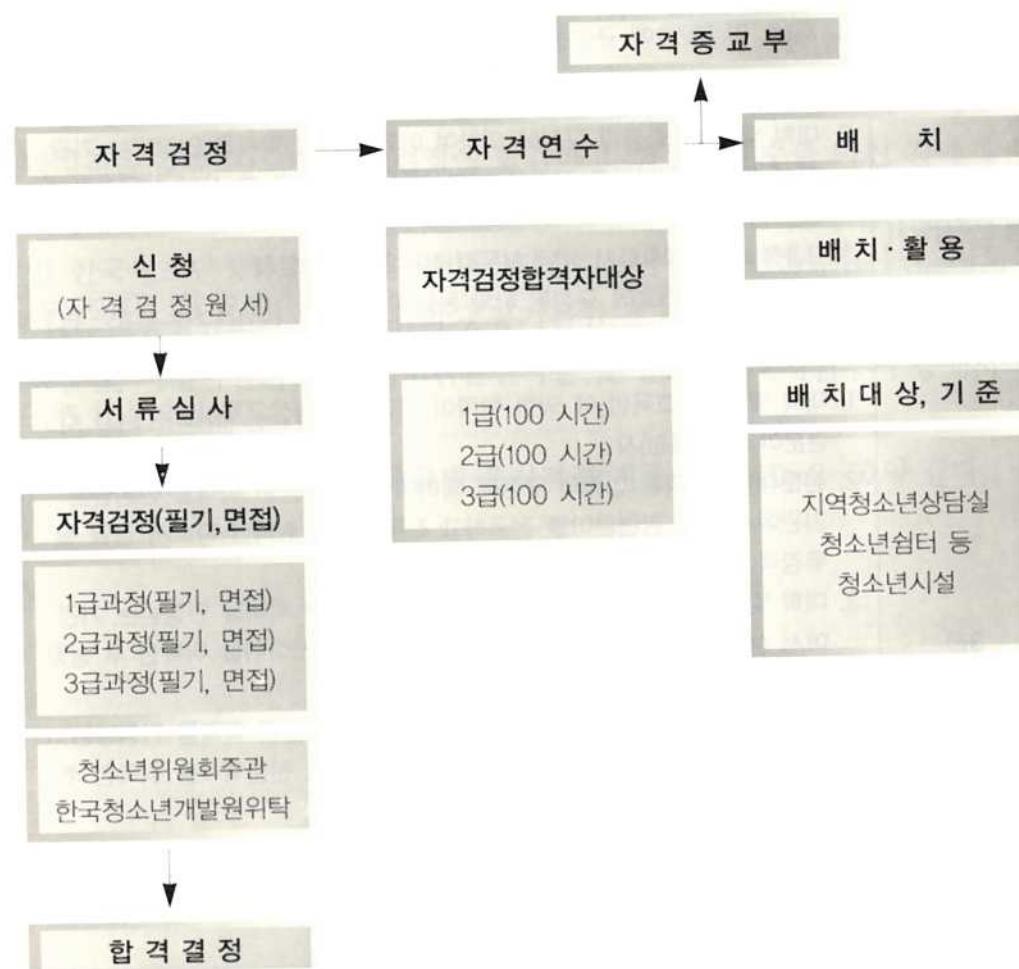
<표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등급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상담 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li> <li>3. 2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li> </ul>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3. 3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li> <li>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li> </ul>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분야 졸업(예정)자</li> <li>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li>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li>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li> <li>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li> <li>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li> </ul>

자료 청소년기본법

###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위원회의 주관으로 한국상담원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정의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이후 지역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시설에 배치·활용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은 다음의 <표 10-2-6>과 같다.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등급	검정 과목		검정 방법
	구분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li> <li>청소년관련 법과 행정</li> <li>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li> </ul>	필기시험 면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 상담 중 2과목</li> </ul>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li> <li>심리측정 평가의 활용</li> <li>이상심리</li> </ul>	필기시험 면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li> </ul>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심리</li> <li>집단상담의 기초</li> <li>심리측정 및 평가</li> <li>상담이론</li> <li>학습이론</li> </ul>	필기시험 면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이해론 · 청소년 수련활동론 중 1과목</li> </ul>	

자료 : 청소년기본법

지도사 급수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득점한 자에 한한다.

〈표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및 시간

구 분	연 수 과 목	연수시간
1급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교육·수퍼비전</li> <li>·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론</li> <li>· 현대사회와 청소년상담</li> <li>· 한국문화와 청소년상담</li> <li>· 청소년상담 관련 법과 행정</li> </ul>	각 20시간씩 총 100시간
2급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li> <li>· 청소년상담 현장론</li> <li>· 가족·부모 상담</li> <li>· 청소년 비행상담</li> <li>· 청소년진로·학업상담</li> </ul>	각 20시간씩 총 100시간
3급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개인상담</li> <li>· 청소년 집단상담</li> <li>· 청소년 매체상담</li> <li>· 청소년 심리검사</li> <li>· 청소년 발달문제와 상담</li> </ul>	각 20시간씩 총 100시간

자료 청소년기본법

####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04년 말까지 제2회의 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124명, 2급 376명, 3급 385명 등 총 885명의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를 배출하였다.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는 1급청소년상담사 또는 2급청소년상담사 3인 이상을 두고, 3급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지방청소년

〈표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2004. 12 현재)

구 分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7	96	22	264	36	246	671
2004	4	17	6	84	11	92	214
계	11	113	28	348	47	338	885

자료 청소년위원회

상담센터에는 2급청소년상담사 또는 3급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쉼터에는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두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 3 장 청소년단체

### 1. 청소년단체 현황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를 발족시켜 범사회적 청소년운동체제를 구축하였다. 이후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기점으로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 1990년 ‘청소년현장’ 신포,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 제정, 1992년 ‘청소년의 해’ 운영, 그리고 1993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 청소년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단체 중 범정단체로는 스카우트연맹, 국제연합한국학생연합회, 해양소년단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청소년단체는 각기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으며, 2005년 현재 이들의 협의기구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59개 회원단체와 기타 가입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여 총 246여개의 청소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229개 단체가 청소년위원회 소관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는 성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 가능하며,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수익금을 사용해야 한다.

### 2. 청소년단체의 주요 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크게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자연수활동, 연구활동, 상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교육 및 체육활동, 국제교류활동, 홍보 및 출판활동, 문예·취미 등 여가활동, 장학 및 포상,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조직강화 활동을 비롯하여 부모, 지역사회인사,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활동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활동은 주로 청협 회원단체 위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활발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에서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설정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지원 속에 각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는 청협의 기능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더불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주 5일 근무(수업)제 도입·시행과 더불어 체험학습 중심의 새로운 청소년교육 요구 등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각 청소년단체간의 연계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범국민적 청소년 육성운동을 확산시켜 청소년단체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3.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가. 설립배경과 목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청소년단체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인 협의체로 창설되었다.

1966년 8월 10일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 가입에 이어, 1972년 8월 15일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 AYC)의 창설멤버로 가입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범국가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운동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현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특수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현재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 나. 기능과 조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간 업무의 협력 및 조정, 현실적인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의견 수렴과 정책제안, 국가 청소년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집행기능, 청소년활

동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 및 연수, 청소년수련활동과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청소년기구(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 WAY,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 AYC)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지원, 청소년운동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현실적인 대안찾기를 위한 연구·조사,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와 단체지도자 및 청소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훈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협은 민법의 사단법인 관련 제도가 준용되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민간 재산의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59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09만여명의 청소년회원과 21만여명의 지도자, 66만여명의 기타 회원 등 총 296만여명이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협의 회원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가 가입 신청을 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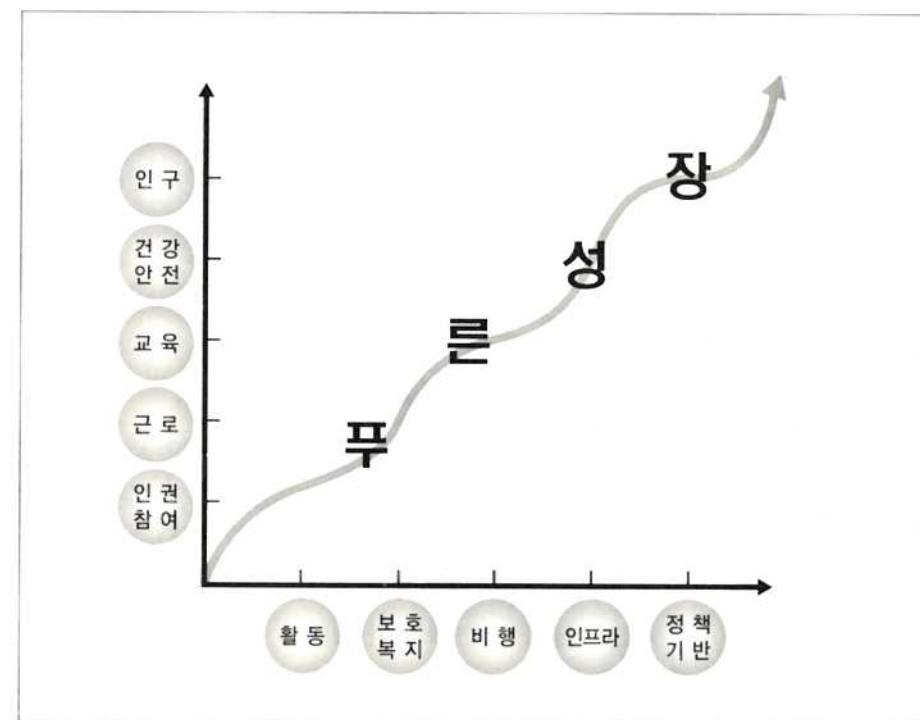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되는 데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회원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5개 시·도 이상의 지부 조직을 갖고 청소년 또는 청소년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청소년회원 중심의 단체,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최소 1년 이상의 활동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인정받은 단체가 된다. 준회원은 청소년육성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정회원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가 대상이 되며, 협력회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와 기타 청

소년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가 대상이 된다.

회원단체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회원단체와의 다양한 업무협조와 지원을 위해 사무총국에는 단체의 중견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회원단체의 청소년대표로 구성된 ‘청소년회의’가 활동하고 있다. 행정업무부서로는 기획관리부에 행정지원팀과 기획예산팀이, 협력사업부에는 국내사업팀과 국제사업팀, 정보지원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 2월부터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청소년 해외취업관광프로그램) 홍보와 비자취득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각종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개원한 국제청소년센터에 문예사업부를 두어 유스호스텔(드림텔)의 공동관리와 지역주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 주요활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는 2004년을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유관 기관,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찾기’, ‘청소년활동 지역기반 구축’, ‘청소년단체 활동 역량 강화’, ‘청소년활동의 대국민 홍보 및 전국적 확산’ 등의 영역별 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혀왔다. 그 밖에 청소년관련 각종 정보지원 활동, 한·아세안 청소년교류활동(제7부 제12장 참조) 등 국제교류활동, 해외취업·관광지원활동인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운영(제7부 제3장 참조), 국제청소년센터 운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책  
기반

## 제11부 청소년정책 기반조성



**청**소년관련 행정기관은 중앙에는 국가 청소년정책을 주무하고 관掌하는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그 외 18개 각 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는 16개 시·도에 과단위의 행정기구가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을 보완하기 위한 청소년행정 관련 조정기구로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있다.

**청**소년관련 R&D기구로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학부, 대학원 등에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등 약 30여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청소년시설 확충 및 여건조성, 청소년보호사업 실시 등을 위한 국고예산, 시·군·구 및 읍·면·동의 청소년시설 건립과 개보수 등을 위한 지방양여금,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 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 1. 청소년위원회

#### 가. 설치경위

정부의 청소년업무 전담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 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1987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면서, 1988년 6월 18일 독립된 부서로 당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처음 설치되었다. 이어서 청소년국은 1991년에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아울러 1997년 3월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되어 문화관광부에 손자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로 소속이 변경되어 활동하여 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종합·조정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본(육성 및 보호) 통합 및 국무총리소속 「청소년위원회」설치를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제정·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정무직(사관급) 1명이며, 위원은 상임 1명(사무처장 겸직), 비상임 1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위원회」사무처는 1관 3단 14팀 130명(중앙집감단 별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처장을 1명(상임위원 겸직)이다.

정책홍보관리관은 혁신인사기획팀, 새정기회팀, 정책홍보팀 등 3팀, 청소년정책단은 정책종합팀, 참여개발팀, 교류문화팀 등 3팀, 청소년활동복지단은 활동기획팀, 인권폭력대책팀, 복지사활팀 등 3팀, 청소년보호단은 보호기획팀, 매체환경팀, 생활환경팀, 청소년성보호팀 등 4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집감단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중앙집감단을 별도로 두고 있다.